

(앞쪽)

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

등록번호	제 호
상호(사업장명칭)	
성명(법인의 경우 대표자)	
사무실 소재지	(전화번호:)
실험실 소재지	(전화번호:)

「물환경보전법」 제38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
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유역(지방)환경청장

직인

<변경사항>

<처분사항>